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봉양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인제, 남창진,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전병주,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도장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집행률 저조 및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에 따른 국비 미편성에 따라 올해부터 동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서울연구원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방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탄 교체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기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세탁소 등)에 관한 규제 조항을 권고로 완화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함(안 제20조)
- 나.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완화하여 수정함(안 제21조)

다.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홍보 및 표창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관리 및 지원”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령”을 “권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

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의 제목 “(소규모 배출원 규제)”를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시장은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의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표창) 시장은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u> <u>규제 및 지원</u> <u><신 설></u>	<u>제4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u> <u>배출원 관리 및 지원</u> <u>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u> <u>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u> <u>규칙」 제5조에 따른 도장시설</u> <u>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u> <u>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u> <u>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u> <u>다.</u>
<u>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u> <u>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u> <u>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u> <u>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u> <u>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u> <u>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u> 1. ~ 3. (생 략) <u><신 설></u>	<u>제21조(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u> <u>관리) ① -----</u> <u>-----</u> <u>-----</u> <u>-----</u> <u>---- 권고-----.</u> 1. ~ 3.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 및</u> <u>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u> <u>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u> <u>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u> <u>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u> <u>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u> <u>다.</u>
<u><신 설></u>	<u>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시</u>

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
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
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장은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
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
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
은 제품의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23조(표창) 시장은 대기환경개
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
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
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및 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및 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나. 전제

- 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및 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는 2024년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 대기정책과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비용(붙임1)을 준용
-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서울시 예산서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7,169,000천원(연평균 1,433,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20조 및 제22조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7,169,000
	소계(a)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7,169,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7,169,000

※ 서울시 예산서 활용

4. 덧붙이는 의견 : 사업 규모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및 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7,169,000천원(연평균 1,433,800천원)
= 1,433,800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20조 및 제22조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7,169,000
	소계(a)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7,169,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1,433,800	7,169,000

※ 비용은 2024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비용을 준용

[붙임 1] 2024년 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설명서

- 사업기간 : 2024.1. ~ 12.
- 대상 :
 - 도장, 도금사업장 방지시설 및 IoT측정기기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업무상업용 일반버너 설치 보일러 및 냉온수기 등
- 사업내용 :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보일러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 소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 총사업비 : 1,434백만원